

아동문학 연구의 토대 마련

—한국방정환재단 역음, 『정본 방정환전집』, 창비, 2019.

류덕제*

『정본 방정환전집』의 출간을 알리는 기사를 접하고 얼마 안 있어 책이 배달되어 왔다. 겨우 대강을 훑어볼 즈음에 서평을 청탁받았다. 사양했다. 방정환(方定煥)에 대해 이렇다 할 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거듭된 요청에 학회의 전 회장을 맡았던 터라 매양 거절만 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적절한 사람을 찾아보고 없으면 나라도 노력 봉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다가 짐을 지게 되었다.

서평은 척 보면 알 수 있는 사람이 써야 제격이다. 그래야 독자들에게도 읽을 맛이 난다. 책임자가 아니면서 일을 맡았으니 걱정이 크다. 방정환에 대해 따로 깊이 있는 연구는 하지 않았지만, 그가 살았던 시대의 아동문학에 대해서는 그 전모를 살피려고 노력해 왔다. 여기에 기대 서평 이랍시고 몇 줄 적어보려고 한다. 깊이는 얇고 폭은 그런대로 격에 맞출 수 있을 듯하다.

1980년대 후반이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토요일이었는데 딱히 손에 잡히는 일도 없었다. 그럴 때면 늘 하는 일이 있었다. 헌책방을 둘러보는 일이다. 바로 무궁화호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 보수동엘 가 보기 위함

* 대구교육대학교, ryudj@dnue.ac.kr

이었다. 대구의 고서점가(古書店街)는 물론이고, 서울의 청계천과 인사동 고서점도 거의 주기적으로 들르던 때였었다. 가끔 들르던 부산에서 의외의 책들을 구할 수가 있었던 기억과 거리상 가까웠기 때문에 부산으로 향했던 것이다. 희구본(稀覯本)은 아예 없고 십치만 꽃혀 있던 한 서점에서 의외로 『심훈전집』(탐구당, 1966)을 발견했다. 그 후 박사과정 발표 과제로 심훈(沈熏)을 배당받아 내심 쾌재를 불렀다. 심훈은 지나치게 『상록수』로 규정되어 왔다. ‘지나치게’란 말 속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심훈전집』을 통독하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

전집이란 누군가 애를 써 자료를 모아야 한다. 독자들은 읽는 데만 공을 들이면 된다. 이십 년은 지난 것 같다. 김동환(巴人金東煥)의 자제인 김영식(金英植) 씨가 파인의 전집을 편찬하기 위해 분주해 하던 때다. 『애국대연설집』(삼천리사출판부, 1940)을 입수하지 못했으며, 값의 고하간에 구입하겠으니 넘겨줄 수 있느냐고 했다.(한 손 건너 들어 당자한테 확인하진 못했다.) 하여튼 그러한 노력 끝에 『파인 김동환전집(전5권)』이 간행되었다.

일제강점기나 해방기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좌익 계열 문인들의 활동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 자료는 일실 되고 사실은 불분명해 애가 탄 적이 많을 것이다. 해방 공간 박헌영(朴憲永)의 행보를 살펴보는 것은 그 시기 문학 연구에 필수적이다. ‘8월 테제’로 알려진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 때문이다. 『이정 박헌영전집(전9권)』(역사비평사, 2004)에 1945년 8월 20일자 문건과 수정 보완된 9월 20일자 문건이 모두 수습되어 있다. 그전까지는 김남식(金南植)이 펴낸 『남로당 연구자료집(전2권)』(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4)에 수록된 9월 20일 자 자료만 볼 수 있었다. 9월 이전에 발표된 임화(林和)나 김남천(金南天) 등의 여러 글에는 ‘8월 테제’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날짜의 차이로 연구자들은 많이 혼란스러워 했었는데 8월 20일

자 문건이 제시되어 문제가 해결되었다. 임경석 교수와 여러 연구자들의 노력 덕분이다. 1993년부터 시작된 작업이 십 년을 넘겨 완결을 보게 된 터라 그간의 노력과 비용이 만만찮았을 것이다. 박헌영의 두 번째 부인 정순년에게서 난 원경 스님(속명 박병삼)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한다. 러시아 아공산당과 코민테른 자료 수집이 필수적인데 여기엔 박비비안나의 도움이 있었다고 한다. 박헌영이 양광(佯狂)하여 출옥한 후 러시아 망명길에 오르던 1928년, 첫 번째 부인 주세죽(朱世竹)에게서 난 딸이 박비비안나다. 한 시대를 들썩거리게 한 ‘비운의 혁명가’ 박헌영의 핏줄을 타고 났지만 성장기에 아무런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아들딸이 아버지의 전집 편찬에 힘을 보탠 것이다.

서두가 길어졌다. 세 가지 에피소드를 늘어놓은 것은 전집 편찬에 공이 많이 들고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였다. 우리 학문 풍토는 전집 편찬에 박한 평가를 내린다. 단편 논문 하나만도 못한 대접을 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누가 시간과 노력과 돈이 드는 전집 편찬에 뛰어들겠는가. 작가들의 온전한 전집이 갖추어지지 못하는 연유가 여기에도 있다. 드러난 작품만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이 분석과 평가를 한들 그 결과는 오십보백보인 경우가 허다하다. 편찬자뿐만 아니라 출판사도 손익분기점을 걱정해야 하는 출판 현실 때문에 전집 발간은 더욱 주저하는 분위기다.

창비는 여느 출판사보다 앞서 아동문학에 공을 들여 왔다. 1977년 『꼬마 옥이』를 시작으로 창비아동문고가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내로라하는 출판사들은 아동문학에 아예 관심이 없었고, 몇몇 출판사들이 양장본 전집 중심으로 아동 도서를 출판하던 당시의 관행에 일대 변혁을 불러일으

켰다. 창비가 여러 사정을 감수하고 『정본 방정환전집』의 출간을 맡은 데는 이러한 책임감도 한몫했을 터이다. 같은 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이 크게 환호할 일이다.

동요(동시), 동화와 소년소설, 아동극은 물론이고 평론, 그리고 신문과 잡지에 실린 이런저런 글들을 망라하였다. 권두언이나 편집후기까지 다 수습하였다. 양(量)의 측면에서 보면 한 작가의 모든 작품(글)을 망라한 그야말로 ‘전집’이다. 책명에 ‘정본(定本)’을 띄하니 없어 놓았다. ‘전집’을 표방하면 ‘정본’이어야 하는 것이 정언명령이다. ‘정본’은 “여러 이본 가운데, 검토하고 교정하여 원본과 가장 가깝다고 판단한, 표준이 될 만한 책”이란 뜻이다. 앞서 발간된 ‘전집’들은 이 어의가 지닌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워 ‘전집’임에도 감히 ‘정본’임을 표나게 내세우지 못했을 것이다.

옛 표기를 오늘날에 맞게 바꾸고, 낱말과 인명 그리고 여러 사항들에 적정한 각주를 붙였다. 필자도 이 비슷한 작업을 10여 년째 해 오고 있는 터라 그 지루하고 따분함을 익히 알고 있다. 여러 사람이 울려퍼지면 일이 쉬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전체를 꿰뚫고 일머리를 다잡을 사람이 없으면 오히려 가닥이 잡히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이 상례다. 모두에게 책임을 부과하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이치 때문이다. 누가 일머리를 틀고 진행을 추동했을까? 한국방정환재단이다. 원종찬 선생의 발간사를 보니, 우여곡절이 있던 재단이 그 모습을 일신한 결과로 『정본 방정환전집』이 간행될 수 있었음을 알겠다.

간행위원과 편찬위원의 면면을 보면 한국 아동문학 연구에 있어 원로와 신진을 아울러 기라성들을 결집하였다. 원종찬, 이재복 선생은 이재철 선생 이후 우리 아동문학 연구를 앞서 이끌어 온 주역이다. 조은숙, 염희경 선생은 뒤를 이어 아동문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

가고 있다. 이기훈, 정용서 선생은 문학 연구에 있어 역사학과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보여 주고 있다.

키를 잡은 선장과 노를 젓는 사공들의 손발이 맞아야 배는 바로 나아간다. 정용서 선생의 ‘작가연보’, 나카무라 오사무(仲村修) 선생의 ‘경성방송국 라디오 출연 경력’, 염희경 선생의 ‘강연회·동화회 일정’과 ‘작품연보’가 제대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정본 방정환전집』의 발간이 가능했음은 불문가지다. 이광수 전집의 간행에 노양환의 연보 작성이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 무슨 일을 하건 실무를 맡은 이들의 노력과 능력이 결합해야 성취가 있는 법이다. 특히 간사 역을 맡은 염희경 선생의 방정환 연구에 쏟은 열정이 굳건한 토대가 된 것으로 안다. 염 선생의 학문적 자세와 탄탄한 연구성과는 동도의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

조은숙 교수에 따르면 지금까지 방정환전집은 11번에 걸쳐 발행되었다고 한다. 대표적인 것은, 해방 전 『소파전집』(박문서관, 1940)을 시작으로 하여, 『소파아동문학전집』(삼도사, 1965), 『소파방정환문학전집』(문천사, 1974), 『소파방정환문집』(하한사, 1997) 등이다.¹ 방정환은 한국 아동문학의 시작이자 기초다.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 전집이 발간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개인이 쓴 모든 글을 망라하여 집성한 것을 ‘전집’이라고 부르는 통념에 걸맞게 방정환전집이 발간되었던가 하는 것은 의문이다. ‘선집’이라 불러야 마땅한 것도 있었고, 어떤 것은 학문적 엄밀성과는 거리가 멀어 발행 목적을 의심할 만한 것도 없지 않았다.

전집은 원본확정(textual criticism)이 필수적이다. 작가가 언제 무엇을 어디에 발표했는지를 밝히고 수집(蒐集)해야 한다. 작가연보와 작품연보는 이

1 조은숙, 「방정환전집의 체제 변화 과정과 새로운 과제」, 『국제어문』 제70호, 국제어문학회, 2016 참조.

과정에서 작성되고 다듬어지는 것이다. 이 작업은 말만큼 쉬운 것이 아니다. 이른바 ‘발로 뛰는 연구’에 공력이 쌓여야 한다. 『정보 방정환전집』은 이상과 같은 삼박자가 잘 갖추어진 편찬진들이 있어 가능했다.

『정보 방정환전집』은 아동문학계에 하도 큰 성과로 자리매김할 만한 것이어서 치사가 길었다. 한두 가지 같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을 적고 마무리를 짓겠다.

먼저 필명에 관한 문제다. 실명을 숨기고 발표된 글이 누구의 작품인지 밝히는 것은 전집 편찬의 기초작업이다. 알다시피 일제강점기 작가들은 다양한 필명을 사용했다. 본명을 밝히지 않으려는 문화풍토도 한몫했지만 다른 이유도 많았다. 작가가 같은 잡지에 지속적으로 작품을 발표해야 하는 경우나, 같은 호에 여러 편의 작품을 실어야 하는 경우, 대체로 필명을 사용했다. 신문도 다르지 않아 같은 지면에 동일 작가의 작품을 2편 이상 수록할 경우 본명과 필명을 섞어 신는 것이 통례였다. 1920~30년대의 문화적 토대로 볼 때 작가적 역량을 갖춘 이용 가능 인력이 충분하지 못했다. 일반문학도 그랬지만 아동문학은 더 그랬다. 그래서 독자들의 투고에 많이 의지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내부 인사가 지면을 채울 수밖에 없었다. 이때 여러 필명을 사용한 것이다. 매체의 많은 부분을 한 사람의 글로 채웠다는 비난은 피해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개벽사(開闢社)는 여러 잡지를 발간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개벽』, 『신여성』, 『학생』, 『별건곤』, 『혜성』(제일선) 등이 그것이다. 개벽사의 사정을 감안할 때 방정환은 이들 잡지에 두루 작품을 발표해야 했다. 비단 방정환뿐만 아니라 김기전(金起田), 이정호(李定鎬), 이돈화(李敦化), 차상찬(車相贊), 박달성(朴達成) 등도 마찬가지였다. 더하고 덜한 차이가 있을 뿐 이

들 필자들은 여러 필명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들 잡지에 수록된 글들의 필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작업은 힘들고 어렵지만 연구자라면 반드시 밝혀내야 할 선결문제다.

방정환의 필명 문제는 이러한 사정과 관련된다. 그만큼 필명은 현재의 연구자들에게 늘 논란이 된다. 여러 사람이 방정환을 연구했지만, 최근 필명과 관련하여 논쟁을 벌인 대표적 논자는 염희경 선생과 장정희 선생이다. 자세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히진 않겠다. 아래 논문들을 매거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염희경 선생의 「소파 방정환 연구」(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방정환의 초기 번역소설과 동화 연구-새로 찾은 필명 작품을 중심으로」(『동화와 번역』 제15호, 2008), 「새로 찾은 방정환 자료, 풀어야 할 과제들」(『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10호, 2012), 「숨은 방정환 찾기: 방정환의 필명 논란을 중심으로」(『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14호, 2014), 「방정환, 다시 문제는 필명이다(1)」(『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3호, 2018) 등과, 장정희 선생의 「方定煥 文學 研究 : ‘소년소설’의 장르의식과 서사전략을 중심으로」(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방정환의 첫 창작동요 ‘크리스마스’의 발견과 그 의미」(『아동문학평론』 제39권 제2호, 2014), 「방정환과 『어린이』 부록 ‘어린이신문’ 『어린이세상』 해제 및 목차」(『근대서지』 제13호, 2016), 「방정환의 필명 쌍S 재론」(『한국아동문학연구』 제33호, 2017) 등이다.

필자도 일제강점기 아동문학가들의 필명을 정리해 본 적이 있다. 특정 작가를 연구할 때 필명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없으면 작품의 누락이나 중복이 흔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별나라』 발행인 안준식(安俊植)을 예로 들어보자. 현재 한국의 여러 저작들에는 안준식이 안평원(安平原)과 동일인이라고 기술되어 있다.² 그러나 안준식과 안평원은 엄연히 다른 인

2 이재철의 『한국현대아동문학사』(일지사, 1978: 121면), 최명표의 『한국근대소년문예운동사』(경진,

물이다. 안준식은 본적이 ‘경성부 혜화동(京城府 惠化洞) 89-3 번지’이고 1934년 당시 주소는 ‘경성부 영락정(京城府 永樂町) 1-65 번지’이다. 안평원의 주소는 1927년경부터 1930년경까지 여러 문건에 ‘영천군 금호면 도남동(永川郡 琴湖面 道南洞)’(혹은 慶北 永川 驛前 道南洞)으로 나타나 있다. 정확한 비정(批正)이 없이 안준식과 안평원을 동일인으로 취급할 경우 작가론이나 작품론의 결과가 뒤죽박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병화(崔秉和)의 필명을 처음 ‘고집(孤蝶)’이라 한 이는 이원수(李元壽)로 보인다.³ 이어 이재철이 『한국현대아동문학사』(일지사, 1978)에서 “孤蝶 崔秉和(1905~1951)” (283면)라 한 이후 여러 논자와 백과사전 등이 하나같이 ‘孤蝶’이라 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孤蝶’이란 필명을 사용한 이가 있었으나 최병화로 보이지 않는다. ‘孤蝶’을 고집할 경우, 최병화의 필명인 ‘蝶夢’, ‘崔蝶夢’, ‘나비꿈(나비쑤, 나뵤쑤)’으로 발표한 작품들은 그의 것이 아닌 것으로 된다. 필명 확인의 필요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정본 방정환전집』의 필명 확인은 엄희경 선생이 했다. 여러 해 동안 논쟁의 중심에 있었고, 엄밀한 확인을 거쳤을 터라 신뢰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신뢰하지만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필명 논란뿐만 아니라, ‘무기명’으로 된 작품들 때문이다. ‘무기명’ 작품 가운데 방정환의 것으로 판정한 것이 여럿 보인다. ‘전집’을 발간하려는 편찬자의 입장이 되면 모든 것을 누수 없이 다 수습하고 싶은 욕망이 강

2012: 34면), 송하춘의 『한국현대장편소설사전 1917-1950』(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659면), 경희대학교 한국아동문학연구센터가 편찬한 『별나라를 차려간少女 3』(국학자료원, 2012: 540면)와 장만호의 논문 「민족주의 아동잡지 『신소년』 연구-동심주의와 계급주의의 경계를 넘어서」(『한국학연구』 제43호,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221면)에 안준식의 필명으로 운파(雲波)와 평원(平原)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3 이원수, 「동일 승천(冬日昇天)한 나비 최병화 형」(『신동아』, 1974년 1월호) 『이원수아동문학전집 29』(웅진출판사, 1984, 173면)에서 재인용.

해진다. ‘망라’의 강박이 커지면 ‘그럴 법함’이 ‘그러한 것’으로 보이게 된다. ‘그럴 법함’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게 만들기도 한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다. 「조선 소년운동」(『동아일보』, 1925.1.1)은 ‘무기명’으로 발표된 글이다. 같은 지면에 「동화작법－동화 짓는 이에게」도 실렸는데 글쓴이를 ‘小波生, 어린이 主幹 方定煥’으로 밝혔다. 『동아일보』는 청탁하면서 분량을 ‘구십 줄’로 써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앞의 글을 방정환이 썼다는 근거로, 그가 당시 대표적인 소년운동가인 점과 본문 중에 『어린이』를 언급한 것을 들었다. 대표적인 소년운동가 중의 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소년운동가 중에는 다른 사람도 있다는 것과, “어린이 잡지는 넓으면 벌을 써운다”고 한 것이라 고유명사로서 『어린이』가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잡지를 뜻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같은 지면에 “동화동요 소품문 세 가지 작법을 구십 줄에 쓰라”고 청탁을 하면서 동일인에게 “조선의 소년운동”이란 굉장한 큰 문대를 구십 줄에 쓰라”고 청탁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누군가 썼기 때문에 작품(글)은 존재한다. 그런데 글쓴이가 필명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무기명이기 때문에 논란이 된다. 기계적 엄밀성을 지키느라 합리적 추론조차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고집하려는 것은 아니다.

의문이 남지만 『정본 방정환전집』의 처리 방식을 존중한다. ‘무기명’의 경우 ‘전집’에 포함시킨 까닭을 나름대로 밝혀 두었기 때문이다. 의문이 있기 때문에 수습하지 않는 것보다는 수습하고 논점이 될 만한 사항을 밝혀두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본다. 오류의 최소화 또는 향후 재확인의 단초를 마련해 둔 것이라 보고 이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이런 설명이 없으면, 뒷날 방정환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정본 방정환전집』

을 기초로 할 텐데 의심 없이 이 글을 방정환의 것으로 확정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비평문을 읽다 보면 방정환의 작품 중에 번역·번안이 많다는 비판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방정환도 예외가 아니다.

꽃호로 方定煥 氏의 「가을밤」(一三二 頁)은 譯謠이며 一七六페이지의 「별이 삼 형제」(原名 「兄弟別」)는 方 氏가 日本 留學 갔다 와서 처음으로 創作한 作謠인 것을 알아주십쇼⁴

方定煥 君이 少年運動과 그의 文藝運動을 振興식혀 온 것은 이곳에서 特記한 事實이다. 그러나 그의 腦는 創作的 機能이 不足하든 感을 이 글을 쓰면서 더욱 더욱 늦기게 된다.

그것은 方 君이 一에서 十까지 그의 童話가 非創作이라는 것이다. 거의 岩谷 小波의 그것을 그대로 옮겨 온 것이 만타. 이 流風은 日本의 少年雜誌를 譯하는 버릇을 가르쳤다고 볼 수 있다. 朝鮮에 少年運動이라든지 少年文藝運動이 透徹한 存在가 업을 쎄에 日本의 그것이라도 가져다가 振興식힌 것은 고마운 일이다. 이것을 整理하고 또한 朝鮮의 것을 完成하도록 創造的 腦와 公正한 論評이 업섯든 까닭이라고 말하고 십다.⁵

요람시대요 초창시대이었던 『소년』 잡지의 운동은 덮어놓고라도 그 뒤의 고 방정환 씨나 오천석 씨의 운동은 그 동화의 내용이나 심지어 잡지 편찬의 체제 까지가 거이 외국의 아동문학의 번역이요 (10여 글자 검은 줄 삭제) 었다고 할

4 高長煥, 「編輯 後 雜話」, 朝鮮童謠研究協會 編, 『朝鮮童謠選集— 一九二八年版』, 博文書館, 1929, 232면.

5 洪銀星, 「童話, 童謠, 其他 讀物—少年文藝 整理運動(三)」, 『중외일보』, 1929.4.15.

수밖에 없다. 방정환 씨는 그 아호(雅號) 소파(小波)라는 것과 그의 동화와 오천석 군과 그 후년의 제씨가 내놓은 동화가 거이 (8여 글자 검은 줄 삭제) 서양동화인 것이 속일 수 없는 사실이다.⁶ (이상 밑줄 필자)

순서대로 고장환(高長煥), 홍은성(洪銀星), 마해송(馬海松)이 쓴 글이다. 당대 아동문학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 사정도 밝았던 이들이다. “—에서 —까지 그의 童話가 非創作”이라거나 “岩谷小波의 그것을 그대로 옮겨 온 것”, “방정환 씨는 그 아호(雅號) 소파(小波)라는 것과 그의 동화와 오천석 군과 그 후년의 제씨가 내놓은 동화가 거이 (8여 글자 검은 줄 삭제) 서양동화인 것이 속일 수 없는 사실”이라 하였다. 이들의 지적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일제강점기 아동문학가(소년 문사 포함)들은 표절이나 번역 혹은 번안을 하면서도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원천탐색을 통해 원작을 밝힐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고, 아니면 논란이 있는 작품의 경우 그러한 사실을 밝혀놓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정본 방정환전집』이 자극제가 되어 아동문학 전집 발간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윤석중(尹石重), 이원수(李元壽), 마해송(馬海松), 강소천(姜小泉) 등 명망가 몇몇을 제외하면 다수의 아동문학가들은 작품조차 제대로 수습되지 못했다. 윤복진(尹福鎭)은 앞의 작가들에 견주어 양이나 질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결코 뒤지지 않을 아동문학사적 위치에 있지만 아직 전집이 발간되지 못했다. 작품 양을 기준으로 거칠게 꼽아 보더라도, 김상덕(金相德), 김태오(金泰午), 남궁랑(南宮琅), 남응손(南應孫), 박고경(朴古京), 박

6 田榮澤, 「(兒童을 爲하야, 其四)少年文學運動의 進路」, 『新家庭』, 1934년 5월호, 51면.

영중(林泳鍾), 송완순(宋完淳), 송창일(宋昌一), 이정구(李貞求), 이정호(李定鎬), 전식(田植), 정순철(丁純鐵, 丁友海), 최병화(崔秉和), 한백곤(韓百坤), 홍은성(洪銀星, 洪曉民), 황순원(黃順元) 등은 전집으로 묶을 만한 분량의 작품을 남겼다.

그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새로 발굴된 작가들을 포함하여, 『한국 아동문학전집』(민중서관, 1962~63)과 같은 방식의 전집이면 될 것이다. 이 동순 선생이 『조종현 전집(전2권)』(소명출판, 2015)을 편찬한 것에는 지역 연고가 작용했을 터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문인 현장 사업의 일환으로 거점 작가들의 전집 편찬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한국 아동문학사가 제대로 집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작가의 전집 편찬이야말로 필수적인 선행과제라 보기 때문이다.

04

부록

후보(2019년 상반기)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회칙

『아동청소년문학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아동청소년문학연구』 논문 심사 규정

『아동청소년문학연구』 논문 투고 규정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연구 윤리 규정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임원 구성

휘보

2019년 상반기

2019년 2월 16일	□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9년도 24회 겨울 학술대회 - 주제: 아동청소년문학과 독자: 존재-인식-실천 - 장소: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 306호 1부: 아동청소년문학 독자의 ‘존재’ ■ 일제강점기 통계를 통해 본 어린이 독자의 존재 발표: 오현숙(서울대) ■ 1960-70년대 학생 독자의 소통 욕망과 잡지 발표: 장수경(목원대) ■ 지금, 아동청소년 출판물의 독자 구분 발표: 김민령(인하대) ■ 종합토론 : 김현숙(고려대), 고지혜(고려대), 김소영(어린이독서교실) 2부: 아동청소년문학 독자에 대한 ‘인식’ ■ 어린이 독자의 경험을 반영한 문학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발표: 방은수(한국교원대) ■ 아동문학에서 ‘독자’는 어떻게 인식되어 왔나? - ‘이중 독자’론을 통해 본 아동문학 독자 인식의 구조와 전망 - 발표: 조은숙(춘천교대) ■ 종합토론 : 이향근(서울교대), 김유진(인하대) ■ 특강: 어린이와 어른, 우리 창작동화로 만나다
-------------------------	--

	강의: 임선복(어린이도서연구회) 3부: 아동청소년의 독서 ‘현장과 실천’ ■ ‘한 학기 한 책 읽기’ 실천에서 성장하는 어린이 독자 발표: 이지영(경인교대) ■ ‘한 책, 한 도시운동’의 아동청소년도서 선정 사업 발표: 오세란(청주교대) ■ 종합토론 : 이유진(전국초등국어교과모임), 김은옥(어린이도서연구회)
2019년 4월 26일	□ 연구발표회 - 장소: 서울교대 에듀웰센터 306호 ■ 그림책에서 보이는 성장 양상 발표: 조유정(공주교대) ■ 토미 웅게리의 그림책과 시학 : <달 사람>과 폴 베를렌의 <달빛>의 상호텍스트적 이미지 관계 발표: 김시아(서울디지털대학)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이름) 이 학회는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The Korea Association of Literature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라 부른다.

제2조(목적)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아래에서는 ‘학회’라고만 한다)는 아동청소년문학에 관련된 여러 현상을 연구하여, 아동청소년문학의 연구를 진작함으로써 한국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할일) 학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학회지와 그 밖에 필요한 출판물을 펴낸다.
2. 학술연구발표회를 연다.
3. 학술대회를 연다.
4. 그 밖에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한 일을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구분)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원: 아동청소년문학을 연구하며 회비를 내는 사람
2. 평생회원: 일반회원으로서 학회에서 결정한 평생 회비를 한목에 낸 사람
3. 특별회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학회의 뜻을 따르며 학회를 돕는 사람
4. 기관회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지를 받아보는 도서관과 그 밖의 단체

제5조(자격) 회원은 아동청소년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소정의 입회비와 입회 원서를 상임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의무) 회원은 학회의 학술 활동과 회의에 참여하고 회비를 내야 한다.

제7조(제명)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물의를 빚으면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구성)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 명
3. 상임이사(총무, 연구, 편집, 출판, 섭외)와 지역이사
4. 감사 2인
5. 고문 약간 명

제9조(회장) 회장은 다음과 같은 일을 맡는다.

1.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부회장단과 협의하여 상임이사회를 구성하고 업무를 맡긴다.
4. 상임이사회에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를 맡긴다.

제10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의 일을 돕고 회장이 유고한 동안에는 회장의 일을 대신 맡는다.

제11조(상임이사) 상임이사는 다음과 같은 일을 맡는다.

1. 총무이사: 학회 운영의 행정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구이사: 학술대회 및 연구발표회의 기획 업무를 맡는다.
3. 편집이사: 학회지 편집과 관리 업무를 맡는다.
4. 출판이사: 학회 출판물의 간행 업무를 맡는다.
5. 섭외이사: 학회 홍보와 대외 섭외 업무를 맡는다.

제12조(감사) 감사는 학회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2. 상임이사는 회장단이 협의하여 임명한다.
3. 임기 중에 자리를 떠난 임원의 선출은 상임이사회에서 한다.

제14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로 선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5조(총회)

1. 총회는 일반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해마다 2월에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개최한다.
4. 총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① 예산과 결산의 승인
 - ② 회칙 개정
 - ③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임
 - ④ 그 밖에 모임의 중대한 일
5. 총회의 의결은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지역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① 사업 계획의 심의
 - ② 예산과 결산의 심의
 - ③ 회원 제명의 심의
 - ④ 학술대회 개최 계획 심의
3. 이사회의 의결은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상임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① 이사회에서 의결한 학회 운영의 실무 기획과 집행
 - ② 상임이사의 분담 업무에 따른 협력
 - ③ 특별회원과 기관회원의 승인
 - ④ 편집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위원 추천
 - ⑤ 그 밖에 필요한 실무
3.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위원회

제18조(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일을 맡는다.
 - ①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 위촉
 - ②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 판정 및 집행
4.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논문 심사 및 투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위원회는 6인 이하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일을 맡는다.
 - ① 연구 부정행위 검증과 심사 결과 보고
 - ② 심사 결과에 따른 사후 제재 조치 결정
4.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학술 활동

제20조(학술대회)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언제라도 열 수 있다.

제21조(연구발표회) 소규모의 연구발표회는 필요할 경우 언제라도 열 수 있다.

제22조(연구세미나) 자료 조사 및 연구 발표를 위한 세미나 모임을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학회지 간행)

1. 학회지 『아동청소년문학연구』를 연 2회 정기적으로 간행한다.
2. 학회지 간행을 위한 기획 및 편집 업무 책임은 편집이사가 맡는다.

제24조(출판물 간행)

1.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아동청소년문학 연구의 발전에 이바지할 만한 출판물을 간행할 수 있다.

2. 출판물 간행을 위한 업무 책임은 출판이사가 맡는다.

제7장 재정

제25조(경비)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26조(회비)

1. 회비의 종류와 액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입회비(1만원)
 - ② 연회비(전임: 3만원 이상, 비전임: 2만원, 기관회원: 5만원 이상)
 - ③ 특별회비
 - ④ 평생회비(50만원)
2. 입회비는 입회원서와 함께 납부한다.
3. 연회비는 해마다 납부한다.
4. 특별회비는 필요할 때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거둘 수 있다.

제27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와 같다.

제8장 해산

제28조 학회를 해산하려면 회원 3/4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9조 학회를 해산할 때에 재산이 있으면 반드시 전액을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에 기부한다.

부칙

제1조 이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이 회칙은 2007년 2월 10일부터 유효하다.

제3조 이 회칙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유효하다.

제4조 이 회칙은 2017년 2월 18일부터 유효하다.

『아동청소년문학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편집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

제2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회장과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7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편집이사가 맡는다.

제3조(위촉) 편집위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참석자의 1/2의 동의를 받아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편집위원의 요건

제5조(편집위원의 요건) 편집위원은 학회의 회원 중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고 연구 활동이 활발한 자 중에서 선정하되, 다음 요건을 고려하도록 한다.

1. 아동청소년문학 연구 분야에 대한 포괄성(동화, 동시, 옛이야기, 그림책, 청소년소설, 비평, 문학사, 문학교육, 미디어 등)
2. 소속 기관의 전국적 분포성
3. 최근 3년간의 연구 업적의 탁월성
4. 해당 학문 분야 활동의 공익성
5. 학문적 평가 안목의 공정성

제4장 편집위원회의 임무

제6조(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과 학회지 편집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며,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특집 기획 등 편집과 관련한 실무를 총괄한다.

제7조(편집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1.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논문 심사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진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일을 돕고, 위원장이 유고한 경우 위원장의 일을 대신 맡는다.

제5장 편집위원회 소집 및 의결

제8조(소집)

1.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해 통상 학회지 발간 2개월을 전후하여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2. 편집위원장은 기타 필요시에 비정기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의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재적 편집위원의 1/2 이상의 출석으로 이루어지며, 출석 위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심사규정) 논문 심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논문 심사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07년 2월 10일부터 유효하다.

제2조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7일부터 유효하다.

『아동청소년문학연구』 논문 심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가 발간하는 『아동청소년문학연구』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고 게재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사위원

제2조(위촉)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며, 투고 논문 당 3인씩 배정한다.

제3조(요건) 심사위원은 관련 분야 연구 실적이 우수한 아동청소년문학 연구자들로 위촉하되, 학회의 회원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제4조(비공개 원칙)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3장 심사 대상 및 논문 접수

제5조(심사 대상)

1. 투고된 모든 논문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정기 학술대회의 기획 발표 논문도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제6조(접수 및 마감)

1. 소정의 투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송할 수 있다.
2. 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되,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논문 접수 마감일로 한다.

제4장 심사 절차 및 기준

제7조(심사 절차)

1.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 규정에 따라 접수된 투고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 당 심사위원을 3인씩 배정하되, 투고자가 기피 신청을 했거나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한 심사위원은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투고 논문, 논문 심사 의뢰서, 논문 심사 결과 보고서, 연구 윤리 규정 서약서 양식을 보낸다.
4. 심사위원에게 투고 논문을 보낼 때는 투고자의 인적 사항, 연구비 지원 여부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
5.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심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심사 기준 항목) 심사 기준은 ‘논문의 독창성’, ‘연구 방법의 적합성’, ‘논리 전개의 타당성’, ‘자료의 적절성’, ‘학계 기여도’ 등의 다섯 항목으로 한다.

1. 논문의 독창성: 논문의 내용이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참신한 것인가.
2. 연구 방법의 적합성: 논문의 연구 방법이 연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것인가.
3. 논리 전개 of 타당성: 논문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명확하며, 논문의 구성과 전개가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4. 자료의 적절성: 논문에서 사용한 연구 자료의 수집과 정리가 적절한가.
5. 학계 기여도: 논문의 결과가 학계의 이론과 실천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제9조(등급 판정)

1. 심사위원은 심사 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항목별로 상, 중, 하로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의 등급 중 하나를 판정하여 이를 ‘논문 심사 결과 보고서’에 기재한다.
2. 심사위원은 등급 판정의 이유를 ‘심사소견’란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게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정했을 경우에도 심사 총평을 ‘심사소견’란에 명시해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심사소견’란에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이 게재가 불가한 수준이라고 판정했을 경우, '심사조건'란에 게재 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제5장 게재 관련 규정

제10조(게재 여부 결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평가를 종합하여 '게재 가', '반려' 중 하나로 판정한 뒤,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고해야 한다.

1. 심사위원 3인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 논문을 최우선 순위로 한다.
2. 심사위원 2인이 '게재 가능', 1인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논문을 ①항의 다음 순위로 한다.
3. 심사위원 2인이 '게재 가능', 1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을 ②항의 다음 순위로 한다.
4. 심사위원 1인이 '게재 가능', 2인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논문을 ③항의 다음 순 위로 한다.
5. 심사위원 3인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논문을 ④항의 다음 순위로 한다.
6. 심사위원 중 1인이 '게재 가능', 1인이 '수정 후 게재', 1인이 '게재 불가'인 경우 ⑤항의 다음 순위로 한다.
7. 종합 판정이 '게재 가능'으로 결정되면 투고자에게 논문심사 결과보고서의 심사 요지를 전달하고 소정 기한 내에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8. 종합 판정이 '반려'로 결정되면 투고자에게 그 사유와 함께 통고한다.
9. 종합 판정을 '게재 가능'으로 받은 논문의 분량이 발행 예정 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 내에서는 심사위원 3인의 총점 합산이 높은 논문, 우리 학회 학술대회 기획 발표 논문, 최근호에 게재한 적이 없는 필자의 논문 순으로 우선 게재한다.
10. 종합 판정을 '게재 가능'으로 받았으나 발행 예정 면수 등의 사유로 게재가 보류된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 우선권을 갖는다.
11. '게재 가능'으로 결정되거나 이미 게재된 논문이라고 해도,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한다.

제11조(재심 신청)

1. 논문이 반려된 경우, 투고자는 반려 통고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투고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재심 신청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3. 재심은 별도의 심사위원 1인을 새로 위촉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4. 재심 위원은 투고 논문, 1차 심사위원의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투고자의 재심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게재 가’와 ‘반려’ 중 하나로 판정한다.
5. 재심 결과에 대해서는 투고자의 이의 제기를 받지 않는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09년 2월 10일부터 유효하다.

제2조 이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유효하다.

제3조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7일부터 유효하다.

제4조 이 규정은 2018년 2월 3일부터 유효하다.

『아동청소년문학연구』 논문 투고 규정

제1조(투고 자격) 논문의 투고 자격은 학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하되, 학문적으로 본 학회의 취지에 부합하고 연구 성과가 우수한 필자에게는 심사 규정에 따라 투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2조(논문의 성격) 아동문학과 청소년문학 관련 분야(동화, 동시, 옛이야기, 그림책, 청소년소설, 비평, 문학사, 문학교육, 미디어 등)의 제반 이론과 실천 연구 논문으로서 타 학술지에 발표된 적이 없으며, 연구 윤리 규정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제3조(접수 방법 및 접수처) 논문은 학회 홈페이지와 연계된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회 홈페이지: <http://childlit.or.kr>

—논문투고시스템: <http://submit.dbpia.co.kr>

제4조(접수 기간 및 발행 일정) 논문은 수시로 접수할 수 있으나, 투고 마감, 수록 논문 확정, 발행 일정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투고 마감	수록 논문 확정	학회지 발행
상반기	4월 30일	5월 말~6월 초	6월 30일
하반기	10월 31일	11월 말~12월 초	12월 31일

제5조(논문 제출 방법)

1. 동일 호에는 1인 1편의 논문만 투고할 수 있다. 단, 2인 이상의 공동 연구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2. 논문 투고 시 논문 파일과 함께 투고 신청서(저작권 이용 동의서 포함), 연구윤리규정 동의서, KCI 논문유사도검사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B 승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3. 논문 게재 신청서에는 필자명, 소속,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입한다. 공동 저자의 경우에도 모두 밝히도록 한다.

4. 논문 파일에는 투고자의 신원과 소속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남겨서는 안 된다.
5. '반려'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제6조(분량)

1.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편집된 페이지 30면) 이내로 한다.
2. 분량을 초과하는 논문이 학회지에 수록될 경우 추가 게재료를 부과한다.
3. 추가 게재료는 학회지 면수를 기준으로 초과된 면당 10,000원으로 한다.

제7조(편집 형식)

1. 논문은 <훈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밝혀야 하며, 저자의 소속기관을 기입하여야 한다.
3. 논문의 체제는 제목, 국문초록, 한글 주제어, 목차, 본문, 참고 문헌,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 순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4. 본문은 장과 절의 소제목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락의 번호는 다음과 같이 증가시킨다.
 - ① 장: 1, 2, 3 ……
 - ② 절: 1), 2), 3) ……
 - ③ 항: (1), (2), (3) ……
5. 기타 원고 형식은 다음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① 용지 크기: A4 (210 X 297mm)
- ② 용지 여백: 위 20mm, 아래 15mm, 왼쪽과 오른쪽 30mm, 제본 0mm, 머리말 15mm, 꼬리말 15mm
- ③ 줄 간격: 160%
- ④ 글자 및 문단 모양:

본문: 10포인트, 장평 100%, 자간 0%, 신명조 혹은 바탕 논문 제목: 15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 장·절 제목: 12포인트, 진하게, 왼쪽 정렬 인용문: 크기 9포인트, 들여 쓰기 10포인트

각주: 크기 9포인트, 내어 쓰기 15포인트
 참고문헌: 크기 9포인트, 내어 쓰기 30포인트
 영문초록: 크기 10포인트

⑤ 문단 모양: 왼쪽 0, 오른쪽 0, 들여 쓰기 10포인트

6. 약물은 다음의 예를 준수하되, 기타 약물 표기는 논저의 일반적 원칙을 따른다.

- ① 단행본, 학술지, 문예지, 신문: 『 』
- ② 논문(학위논문 포함), 평론, 작품: 「 」
- ③ 노래, 영화 등: 〈 〉
- ④ 표 제목: [표 1]
- ⑤ 그림 제목: [그림 1]
- ⑥ 강조 사항: ‘ ’
- ⑦ 직접 인용: “ ”

제8조(각주)

1. 각주는 완벽한 서지정보를 갖추어, 다음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① 한국어 및 동양어 문헌: 저자명, 「논문 제목」, 『학회지명』 호수, 기관명, 연도, 수록 면수.
- ② 서양어 문헌: 저자명, “논문 제목”, 저널명, 호수, 연도, 수록 페이지수.

김상욱, 「아동문학의 장르와 용어」, 『아동청소년문학연구』 4, 2009.6, 8면.
 최인하, 「동화의 특질과 발달과정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1967, 70면.
 稻田浩一, 『日本昔話百選』, 東京: 三省堂, 1971, 60면.
 Brown, R., ‘Children’s Book Challenges: The New Wave’, *Canadian Children’s Literature* 68, 1992, pp.27~32.
 Liner, L., *A History of the Writing of Beatrix Potter*, London: Frederic Warne, 1987, p.70.

2. 저자명의 표기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한국어 및 동양어 문헌: 공동저자의 경우 3인까지는 모두 나열하되 저자 사이에 가운테점(·)을 찍어 구분하고, 4인부터는 ‘○○○ 외 ○인’으로 표기한다.
- ② 서양어 문헌: 공동저자의 경우 2인일 때는 저자 사이에 ‘&’를 넣고, 3인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저자 앞에 ‘&’를 넣는다.

임성규·이주형·류덕제, 『한국 아동청소년문학 연구』, 한국문화사, 2009, 60~65면.

원종찬 외 14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편, 『한국아동문학사의 재발견』, 청동거울, 2015, 30면.

Fox, W. & M. Taylor, *Writing Literacy*, Amsterdam : John Benjamins, 1995, p.45.

Ritchie, G. D., G. J. Russel, A. W. Black, & S. G. Pulman, *Computational Morphology*, Cambridge, MA : MIT Press, 1992, p.100.

3. 서명의 표기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한국어 및 동양어 문헌: 논문 제목에는 낫표(「」)를, 단행본 제목에는 겹낫표(『』)를 사용한다.
- ② 서양어 문헌: 논문 제목에는 따옴표(‘’)를, 단행본 제목은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4. 인터넷 자료는 제작자, 자료명, 연도, 인터넷 주소, 검색일 순으로 표기한다.

아동문학국제연구학회, 아동문학 저널 리스트, <http://www.irscl.com/journals.html>(2016.12.22.)

제9조(참고문헌)

1. 참고문헌은 완벽한 서지정보를 갖추어, ‘1.기본 자료, 2. 논문 및 평론, 3. 단행본, 4. 기타’ 순서로 작성한다.
2.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인용한 문헌을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참고문헌은 한국어, 동양어(중국어, 일본어, 기타 동양어 순), 서양어(영어, 프랑스, 독일어, 스페인어, 기타 서양어 순) 문헌 순으로 배열하며, 동일 언어의 문헌은 저자명의 자모순에 따라 배열한다.
4. 참고문헌은 각주와 마찬가지로 완벽한 서지정보를 갖추어 작성하되, 학회지 논문은 수록된 첫 번째 면과 마지막 면수를 명기하며 단행본의 경우에는 수록 면수를 표기하지 않는다.

제10조(초록)

1. 국문초록은 다음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① 국문초록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연구 방법, 결론 등으로 구성하되, 논문의 주제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명료하게 작성한다.
 - ② 국문초록은 500자 내외의 2~3개의 단락으로 작성한다.
 - ③ 주제어는 논문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5~7개의 용어로 작성한다.
2. 영문초록은 다음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① 영문초록의 제목은 내용어(content words)는 대문자로 시작하고, 기능어(function words)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 ② 저자명은 로마자로 표기하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00-8호) 및 성명 표기 권장안(2013.3.8.)에 따라 성(Surname), 이름(Given Name) 순으로 띄어 쓴다.

Kim Noma

- ③ 잡지명, 저작명, 신문명 등은 영문명이 있을 경우 그대로 표기하며, 한글 표기의 경우 국어로마자표기법에 따라 제시한 후 대괄호[] 안에 영역(英譯)을 병기한다.

『사랑의 선물』: *Sarangue Seonmul* [A Gift of Love]

「바위나리와 아기별」: *Bawonariwa Akibyaol* [The Lily and the Star Child]

- ④ 각종 위원회 및 모임의 표기는 국어로마자표기법에 따라 제시한 후 괄호() 안에 영역(英譯)을 병기하되, 고유명사는 번역하지 않는다.

색동회: Saekdonghye(Saekdong Club)

- ⑤ 영문 주제어(Keywords)는 국문 주제어와 같은 순서로 작성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07년 2월 10일부터 유효하다.

제2조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유효하다.

제3조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부터 유효하다.

제4조 이 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유효하다.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연구 윤리 규정

한국아동청소년문학회(The Korea Association of Literature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이하 학회)는 아동문학과 청소년문학에 관련된 여러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한국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회원은 출판, 연구 발표 등 제반 학술 연구 활동에서 연구자로서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학술적 성과에 대한 신뢰도를 진작시키고 학회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을 의무를 갖는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회의 학술 연구 활동에서 연구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 규정을 공포하고,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증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검증 이후의 후속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본 규정은 학회의 모든 회원과 본회의 학회지나 기타 학술 간행물에 투고한 자,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연구자에 대한 윤리규정

제3조(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 금지) 학회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행해진 ‘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 행위를 대표적인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한다. ‘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에 관한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위조’는 연구자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자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것을 말한다.

- ③ ‘표절’은 연구자가 이미 발표된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중복 게재’는 연구자 본인이 이미 발표한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중복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가 저자의 승인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되고 편집되어 학회지의 특집호로 게재되는 경우에는 중복 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4조(저자 표기)

- ① 저자는 연구에 실제로 참여한 자만 인정받는다.
- ② 공동 저자인 경우, 상대적인 지위나 직책에 관계없이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제1저자를 정한다.
- ③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 예우나 감사의 표시를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제5조(인용 및 참고 표기)

- ① 타인의 아이디어,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원저자와 출처를 밝혀야 한다.
- ② 원저자와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 표시 없이 상당히 많은 양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③ 자신이 발표한 논문이나 저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인용해야 한다.

제6조(생명윤리)

- ① 연구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② 인간대상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02-2023-7614)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회에 대한 윤리규정

제7조(편집위원의 책무)

-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모든 논문을, 투고자의 성별, 연령, 인종, 소속 기관, 개인적인 친분 등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을 선정해야 하며, 게재 여부의 판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편집 과정에서 대상 논문의 저자 및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편집위원은 게재 예정인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발표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 ④ 편집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제보될 경우,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심사위원회에 대한 윤리규정

제8조(심사위원의 책무)

- ① 심사위원은 개인의 학술적 지향을 떠나, 논문의 질적 수준과 규정 준수 여부를 판정 기준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대상 논문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게재 예정인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발표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 ④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 신속하게 제보해야 한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 ① 학회는 회원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6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학회의 회원 중, 회장의 제청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출석 숫자에는 포함하나, 의결 숫자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 ④ 피제소자와 관련된 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행위의 제보)

- ① 연구 부정행위는 학회의 운영위원회나 편집위원회에 전화, 전자우편,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 ② 제보는 실명 혹은 익명으로 할 수 있으나, 단 익명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제보해야 한다.

제12조(부정행위 검증 절차)

- ① 위원회는 상당한 의혹이 있는 구체적인 제보가 접수되는 경우, 회장 또는 위원장의 심사 요청에 의해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를 개시한다.
- ② 위원회는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며, 경우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제보자나 피제소자에게 소정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출석 숫자에는 포함하나, 의결 숫자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 ④ 위원회는 최종 판정에 앞서 피제소자에게 소명의 권한을 부여하고, 소명 자료 준비를 위한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13조(심사 결과 보고)

- ① 위원회는 부정행위 심사 결과를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 ② 보고서에는 심사 대상 논문, 부정 행위의 내용, 심사위원의 명단 및 절차, 피제소자의 소명 내용, 판정 결과, 후속 조치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 ③ 보고서는 학회에서 5년간 보존한다.

제14조(제보자와 피제소자에 대한 보호)

- ① 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 심의 과정에서 제보자와 피제소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 ② 피제소자의 연구 부정행위가 확증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는 부정행위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제소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제15조(후속 제재 조치) 연구 부정행위가 확증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가하되,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 ① 연구자의 학회 회원 제명
- ②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의 경우 게재 취소
- ③ 학회 홈페이지 및 학회지를 통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공시
- ④ 학회 논문 투고 3년간 금지
- ⑤ 위원회 명의의 견책 통지 발송
- ⑥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 통보
- ⑦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제16조(재조사 및 명예회복)

- ① 제보자 또는 피제소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심사 결과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된 경우, 위원회는 피제소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피제소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고의로 허위 제보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 박탈, 관련 사실의 공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09년 2월 14일부터 유효하다.

제2조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부터 유효하다.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임원 구성

(2019.3.1.~2021.2.28.)

고문		강정규(《시와동화》), 도정일(경희대), 신헌재, 최인학(인하대)
회장		권혁준(공주교대)
부회장		조은숙(춘천교대), 배봉기(광주대), 이지호(진주교대)
감사		김경희(광주교대), 박금숙(진주교대)
총무 이사		김상한(한국교원대), 김수영(건국대)
연구 이사	선임이사	이지영(경인교대), 장수경(목원대), 김지은(서울예대)
	동화	박영기(한국외대), 선주원(광주교대), 양윤정(건국대), 염희경(한국방정환재단)
	동시	김유진(인하대), 김제곤(인하대), 진선희(대구교대)
	옛이야기	김명옥(건국대), 김환희(춘천교대)
	그림책	김서정(중앙대), 김세희(성균관대), 엄혜숙(인하대)
	청소년소설	김성진(대구대), 오세란(공주교대)
	비평	김경연(평론가), 이재복(평론가), 최윤정(평론가)
	문학교육	한명숙(공주교대), 최은경(인하대), 남지현(인천가원초등학교), 임경순(한국외대)
출판이사		오현숙(서울대), 권현희(어린이도서연구회), 정진현(건국대), 조태봉(단국대)
섭외이사		유영진(춘천교대), 장정희(경희대), 최미경(건국대)
지역 이사	서울	윤동재(고려대)
	경기 인천	김창원(경인교대)
	강원	박정애(강원대)
	충북	김미혜(청주교대)
	충남	김화선(배재대)

	전북	김자연(전주대)
	전남	염창권(광주교대)
	경북	임성규(대구교대)
	경남	심상교(부산교대)
국제 교류 이사	한국	김영순(일본 바이카여대), 유영중(인하대)
	중국	김만석(연변대), 두전하(중국 저장 사범대)
	미국	위종선(위노나 주립대)
	일본	나카무라 오사무(오사카)
편집 위원회	위원장	이향근(서울교대)
	부위원장	김태호(춘천교대)
	위원	원종찬(인하대), 김성진(대구대), 김화선(배재대), 류덕제(대구교대), 최원오(광주교대)
윤리 위원회	위원장	김환희(춘천교대)
	위원	김정란(건국대), 배봉기(광주대), 선안나(성신여대)
간사	총무간사	배재훈(한국교원대)
	편집간사	박용우(서울교대)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4

2019년 6월 23일 인쇄

2019년 6월 30일 발행

지은이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발행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펴낸곳 도서출판 역락 02)3409-2058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 46길 6-6 문창빌딩 2층

전화 02-3409-2058

팩스 02-3409-2059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9

본 학술지에 실린 모든 논문의 출판권은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에 있으므로
무단으로 복사, 전재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ISSN 1976-8036